

예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

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

예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「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 의결한 2027 ~ 2030년도 예천군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= 아 래 =

□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결정

구 분	합 계	월정수당(연간)	의정활동비 (연간)	비고
2027년도	41,323,320원	23,323,320원 (3.5% 인상)	18,000,000원	
2028년도	-	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.	18,000,000원	
2029년도	-	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.	18,000,000원	
2030년도	-	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.	18,000,000원	

- ※ 단, 월정수당 상한액인 23,323,320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의정활동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
- ※ 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